

## 제29기 네오위즈홀딩스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3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하여 제29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일 시:** 2026년 3월 27일(금요일) 오전 8시

**2. 장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하 2층 국제회의장

### 3. 회의목적사항

1) 보고사항: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2)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제29기(2025.01.01~2025.12.31)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 승인의 건(1주당 배당금: 486원)
-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첨부1]**
  - 제2-1호 의안: 개정 상법 반영의 건
  - 제2-3호 의안: 기타 정관 변경의 건
- 제3호 의안: 사내이사 김상욱 선임의 건 **[첨부2]**
- 제4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첨부3]**
- 제5호 의안: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의 건 **[첨부4]**

### 4. 경영참고사항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 및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https://kind.krx.co.kr>)에서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호 제5조에 따른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1)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관리 시스템: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2) 전자투표 행사 및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6년 3월 17일 9시 ~ 2026년 3월 26일 17시

(행사기간 중에는 24시간 전자투표 행사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3) 시스템에 공인인증 등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4)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관으로 처리

## 6.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1) 직접 행사: 신분증
- 2) 대리 행사: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7. 기타 총회 참석 안내

긴급상황 등의 비상사태 발생에 따른 장소 변경 및 기타 집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의 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되었으며, 불가피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정정공시 및 재공고 등으로 즉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2026년 3월 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4(삼평동, 네오위즈판교타워)**

**주식회사 네오위즈홀딩스 대표이사 김 상 욱**

[첨부 1]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1. 정관 변경(안) 신구조문대비표

구분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1호: 개정 상법 반영의 건	(신설)	<b>제9조의6(자기주식의 보유 및 처분)</b> <u>회사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전략적인 제휴, 인수 합병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u>	개정 상법에 따른 자기주식 활용방안 근거 마련
	<b>제27조 (이사의 수)</b> 당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8인 이하로 하고, <u>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u>	<b>제27조 (이사의 수)</b> 당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8인 이하로 하고, <u>독립이사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u>	사외이사 명칭 변경
	<b>제29조의2 (이사의 책임감경)</b> ① 당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이사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b>제29조의2 (이사의 책임감경)</b> ① 당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포함한다)의 6배(독립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외이사 명칭 변경

	<p><b>제30조 (이사의 보선)</b>          이사가 결원되었을 때는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결 선임한다. 그러나 법정원수가 되고 또한 업무집행상 지장이 없을 때는 보결 선임을 보류 또는 다음 정기 주주총회시까지 연기할 수 있다. 단, 보결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p>	<p><b>제30조 (이사의 보선)</b>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27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② 독립이사가 사임, 사망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7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u></p>	<p>사외이사 명칭 변경 및 조문 정비</p>
	<p><b>제37조 (이사의 의무)</b>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u>회사를 위하여</u>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나 감사위원회 위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p>	<p><b>제37조 (이사의 의무)</b>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u>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u>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u>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하여야 한다.</u>          ③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나 감사위원회 위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p>	<p>사외이사 명칭 변경 및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 명시</p>

	<p><b>제39조(감사위원회의 구성)</b></p> <p>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u>사외이사이어야 한다.</u></p> <p>③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 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p> <p>④ 감사위원회위원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p> <p>⑤ 제3항·제4항의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u>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u> <u>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u>)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p>	<p><b>제39조(감사위원회의 구성)</b></p> <p>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u>독립이사이어야 한다.</u></p> <p>③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 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p> <p>④ 감사위원회위원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p> <p>⑤ 제3항·제4항의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u>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u>)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p>	<p>상법 개정 관련 조문 정비</p>
--	---	---	---------------------------

	<p><b>제39조의2 (감사위원의 분리 선임 및 해임)</b></p> <p>① 제39조에 따라 구성하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중 <u>1명은</u>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분리선임한 감사위원회위원을 해임하는 경우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p>	<p><b>제39조의2 (감사위원의 분리 선임 및 해임)</b></p> <p>① 제39조에 따라 구성하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중 <u>2명은</u>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분리선임한 감사위원회위원을 해임하는 경우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p>	<p>상법 개정 관련 조문 정비</p>
<p>제2-2호: 기타 정관 변경의 건</p>	<p><b>제44조 (이익금의 처분)</b></p> <p><u>매기 총수입금에서 총 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익준비금</li> <li>2. 기타의 법정적립금</li> <li>3. 배당금</li> <li>4. 임의적립금</li> <li>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li> </ol>	<p><b>제44조 (이익금의 처분)</b></p> <p><u>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익준비금</li> <li>2. 기타의 법정적립금</li> <li>3. 배당금</li> <li>4. 임의적립금</li> <li>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li> </ol>	<p>중간 배당 변경에 따른 조문 변경</p>
	<p><b>제45조 (이익배당)</b></p> <p>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p> <p>② <u>제1항의 배당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u></p> <p>③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p>	<p><b>제45조 (이익배당)</b></p> <p>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p> <p>② <u>회사는 제1항의 배당을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여야 하며, 그 경우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u></p> <p>③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p>	<p>조문 정비</p>

	<p><b>제45조의2 (분기 배당)</b></p> <p>① 회사는 4월 1일 0시, 7월 1일 0시, 10월 1일 0시 현재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p> <p>② 제1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p> <p>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li> <li>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li> <li>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li> <li>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li> <li>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에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li> <li>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li> <li>7. 당해 영업년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li> </ol> <p>④ 제1항의 분기배당은 분기배당 기준일 전에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동등 배당한다.</p> <p>⑤ 제8조의2의 종류주식에 대한 분기배당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p>	<p><b>제45조의2 (분기 배당)</b></p> <p>①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 6개월 및 9개월 경과 후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2에 따라 금전으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p> <p>②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p>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li> <li>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li> <li>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li> <li>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li> <li>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에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li> <li>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li> <li>7. 당해 영업년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li> </ol> <p>④ 제1항의 분기배당은 분기배당 기준일 전에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동등 배당한다.</p> <p>⑤ 제8조의2의 종류주식에 대한 분기배당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p>	<p>중간 배당 변경에 따른 조문 변경</p>
--	---	--	-----------------------------------

부 칙		<b>부 칙</b> <b>제1조(시행일)</b> 이 정관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b>제2조(독립이사에 관한 적용례)</b> ① 제27조, 제29조의2, 제39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독립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법률 제20991호, 2025.7.22>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2027년 7월 22일 이내에 독립이사를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b>제3조 (감사위원회에 관한 적용례)</b> 제39조 제5항의 개정 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상법 개정 관련 부칙 정비
-----	--	--	-------------------

**[첨부 2] 제3호 의안: 사내이사 김상욱 선임의 건**

**1) 후보자 성명 등**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해당법인과의 최근 거래내역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김상욱	1968.02.12	사내이사	없음	임원(특수관계인)	없음	없음	없음	없음

**2) 후보자 약력 등**

후보자 성명	생년월	주된 직업	주요 경력
김상욱	1968.02.	現) ㈜네오위즈홀딩스 대표이사(사내이사)	現) ㈜네오위즈홀딩스 대표이사 現) ㈜네오위즈파트너스 대표이사 現) 지온인베스트먼트(주) 대표이사 現) ㈜네오위즈 사내이사 前) ㈜네오위즈홀딩스 사내이사

			前) ㈜코스콤 상임감사
--	--	--	--------------

**[첨부 3] 제4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구분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보수총액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당기 (제30기, 2026년)	7(3)	40억
전기 (제29기, 2025년)	7(3)	40억 (11억)

**[첨부 4] 제5호 의안: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의 건**

※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시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는 상법 개정의 경과에 따라, 주주총회일(2026년 3월 27일) 전에 시행되지 않을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해 본 안건은 폐기될 수 있습니다.

가.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목적

-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전략적 제휴, 인수 합병 목적 등
- 임직원 보상 목적

나. 보유 또는 처분 대상이 되는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방법

주식의 종류	취득방법	주식의 수량
보통주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취득	1,977,093주

주) 실제 처분수량은 경영 환경 및 임직원 보상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보유 개시시점 및 예정된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관련사항

보유/처분 목적	취득방법	주식의 종류	보유개시시점 기준		처분예정시점 기준	
			보유개시시점	주식수(주)	처분예정시점	주식수(주)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 방법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전략적 제휴, 인수 합병 및 임직원 보상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취득	보통주	2026년 3월 27일	680,000	-	-
전략적 활용 목적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취득	보통주	2026년 3월 27일	1,185,927	2027년 9월	1,185,927
	특정 목적에 의한 취득	보통주	2026년 3월 27일	111,166	2027년 9월	111,166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한 잔여주식의 종류 및 수량		보통주	2026년 3월 27일	6,165,190	-	6,165,190
발행주식총수 대비 자기주식 비율의 변화		보통주	2026년 3월 27일	24.5%	-	9.9%

주1) 당사는 자기주식 224,000주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해 2026년 3월 5일 자기주식 소각을 결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가 공시한 '주식소각 결정' 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보유 예정인 자기주식 보통주 1,977,093주 중 680,000주는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전략적 제휴, 인수 합병 및 임직원 보상 등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보유할 예정입니다.

주3) 보유 예정인 680,000주 외 소각 후 잔여 보유 자기주식인 1,297,093주에 대하여 2027년 9월까지 투자 등 전략적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단, 전략적 활용방안이 도출되지 않을 시 2027년 9월 해당 물량을 전량 소각할 계획입니다.

라. 예정된 보유기간

예정된 자기주식 보유기간은 2026년 3월 27일 ~ 2027년 정기주주총회 개최일까지이며, 경영 환경 및 임직원 보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 예정된 처분 시기

예정된 처분 시기는 경영 환경 및 임직원 보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2027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계획에 따른 이행 현황 및 계획을 보고할 예정입니다.